

2023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공고(2차)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6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규모: 100억원 내외

☞ 단, 근력보조슈트는 2차 공모 지원규모의 10% 내외

3.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첨부1]
-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제외

□ 참여제한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제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참여 제한 사유>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담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 '23년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4. 지원내용

○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부가세 미지원

○ (지원품목) 스마트 안전장비 14개(17종)

- 품목별 세부설명,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은 세부내용참조[첨부2]

구 분	취급품목
안전품목 (11개)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옵션: 흔들림 방지장치)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3종)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인화성가스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보건품목 (3개)	근력보조슈트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스마트 귀마개

※ [첨부2]최소성능기준 및 지급기준 미충족시 지원불가(반드시 해당 품목별 기준 확인)

○ (주요 변경품목) 스마트 안전장비 6종*[해당품목(번호)은 첨부2 참조]

- * 「②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③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⑤인공지능(AI)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⑩인화성가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IOT기반), ⑪이륜차 충돌보호용 에어백 조끼, ⑫근력보조슈트」

5.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추진절차]



가. 공모신청

○ (신청기간) 2차: '23. 5. 16.(화) 14:00 ~ 5. 31.(수) 14:00

※ 향후 공모 일정: 3차(6월말, 100억내외) / 4차는 필요시 추진 예정

○ (신청방법)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 매뉴얼: 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제작·공급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 (제출서류)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참여사업장 이용 동의」 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명으로 서명(사업장명 또는 담당자명 등의 서명은 반려 등 조치)

구 분	비고
①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②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③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등)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⑤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첨부4)

⑥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용)	(첨부4)
⑦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 기계 등 해당 시	해당시
⑧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표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 지급기준 참조	해당시 (첨부4)
⑨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해당시
⑩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해당시
⑪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해당시

※ ④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 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

☞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⑨의 가격결정 근거자료는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5건 이상)로써 일부품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제출함

*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차량탑재형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인화성가스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이동식)**

나. 보조지원 결정

- 신청기간 종료 후 안전보건공단 우선지원 선정기준[첨부3]에 따라 지원사업장을 선정
- 공단은 선정 사업장에 대해 요건검토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투자계획을 확인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함
- 지원결정 결과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해 확인 가능(6월중 예정)
- ☞ 로그인 > 사업신청 내역 > 신청사업의 진행상태 확인 “결정통보”

다. 투자완료 및 확인요청

- (시설개선) 지급대상자는 결정통보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 등 유해위험요인을 개선
- (확인요청)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구 분		비고
①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		
②-1 실거래 입증서류: 거래내역 증빙		
오프라인 구매 시	온라인 구매 시	
(제품 구매) 계약서 사본 1부	구매내역(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 포함내용: 모델명, 수량, 금액, 결제방법	
②-2 실거래 입증서류: 입금증빙서류		
③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 검토보고서		해당시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⑤ 지급보증보험증권		(첨부5)
⑥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제작·공급)업체별 소요금액 500만원 이상시 제출)		해당시(첨부6)
⑦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완료용)		(첨부4)
⑧ 품목별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인증·검사 관련 서류 ※ 크레인 주요구조부 변경에 따라 안전인증 시 소요비용 증빙 서류 제출		해당시
⑨ 품목별 추가요구 서류(AI 카메라 설치 서약서, 보호구 지급대장 등)		해당시(첨부4)
⑩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첨부4)
⑪ 품목별 「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		(첨부4)

※ ④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
- ☞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가격취득자 명부 제출

<입금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전자세금계산서+사업장 및 공급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 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텍스))
* 이체 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 ②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자와 공급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라. 투자완료 확인

- 공단은 현장확인을 통해 투자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 최소성능기준 및 지급기준 적정 여부, 기제출한 투자계획서 등 지원품목 사양, 납품 공급업체 일치 여부 등

☞ 부적정한 경우, 1개월 보완기간 후 적정여부 확인(부적정시 결정 취소)

마. 보조금 지급

- 공단 투자완료 확인 후 1~2개월 내 신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일정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 공지사항 > 23년 클린사업 보조금 지급 일정 알림 참고

5. 기타사항

- 문의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클린사업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알림마당>지역별 문의처 참고

- (부정수급) 신청 자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지원 취소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조 지원금을 환수 및 제한함

※ 부정수급 영업행위 등 부정당행위 발생 시 재정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품목의 지원조건 등을 변경 후 즉시(2차 공모부터) 적용

<주요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

-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③ 제작·공급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돌려 받는 경우(페이백)
- ④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 ⑤ 보조금 지급 후 5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⑥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는 경우
 - 안전장치 등을 임의 해제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 ⑦ 공단의 사후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기술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 ⑧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 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과 추가적인 금액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보조지원 결정 취소 시 최대 5년간 참여 제한 조치 적용

○ (사후관리)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3년)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 (품질보증) 사후관리기간 동안 A/S 유지토록 품질보증기간*(3년) 의무

* 1년 무상, 2년 유상(제품의 본질적 문제는 제작·공급업체 부담 조건)

■ 개요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하고자 함

Q.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은 ①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

- ☎ 문의

- 일반상담(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02-3215-2674**

[별지 제3호 제식]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발급번호 : 0000 - 0000 - 00000

중소기업 확인서

①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기업명 : _____

사업자등록번호 : _____ 발급등록번호 : _____

대표자명 : _____

② 주소(본점) : _____

유효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

• 확인서 신청지점

사업자등록번호 : _____

주소 : _____

이 기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③

※ 주의사항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 해당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공적확인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발급에 한하여 효력)
- 발급이유 및 유효기간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유효기간 만료, 유효기간 만료일 만료 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료를 통해 유효기간 만료 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확인사항중

- ① 신청사업장이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원(중기업 지원불가)

- ② 유효기간 :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가능

※ 유효기간 산정기준 : 1년(+3개월)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
-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

1.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 (지원목적) 위험구역 내 접근 시 실시간 감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끼임·충돌 및 그 밖에 위험상황(화재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인공지능(AI)기반 모델 및 카메라를 통해 위험영역·행동, 사고발생 등을 인지하여 경고 또는 조치를 수행하는 시스템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1. 생산설비, 위험기계기구 사용 공간, 작업자가 상시 이동, 작업하는 구역에 설치 ※ 단, 창고·보관·보안 등 단독용도인 경우는 설치 불가 2. 화면이 끊김, 부자연스러움, 시스템(성능)불안정 등은 지원 불가 3. 경보장치는 작동시 작업현장에서 작업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 4. 끼임·부딪힘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작동되어야 함(쓰러짐, 화재 감지 등 안전·보건에 관한 기능을 옵션 추가 가능) 5.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까지 「인공지능(AI)관련 카메라 설치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지원(첨부4) 6.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 받아 기준가격 산정 7. 사후기술지도 대상 품목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성	최소 성능기준
카메라	- 종류 : 열화상카메라 또는 일반카메라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통합제어장치 (AI영상처리장치, 컴퓨터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비 및 그 밖에 장치 등)	-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 끼임·부딪힘과 추가 옵션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작동 (경보 또는 조치 등) · 분진유입,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 제작, 사무실 설치 등 조치 조건 · AI알고리즘 사용 : YOLO 객체 탐지 수준의 알고리즘 이상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 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에서 AI알고리즘 사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
감지영역설정	- 카메라가 감지하는 위험구역 변경 가능
경보장치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경보음) 필수

2.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2차공모 적용)



- (지원목적) 작업 중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고위험 기계설비에 센서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접근 및 행동에 따라 설비의 전원차단 및 정지하는 시스템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1. 고위험 기계설비*를 보유(신규설치포함) 및 사용하는 사업장 * 생산·가공·용접·조립·검사·포장·이송 등 생산작업 관련 소 고위험 기계설비 2.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설치기준은 안전인증·검사 기준에 따른 것. 3. 경보장치는 작동시 작업현장에서 작업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 4. 고위험 기계설비가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既검사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인증·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5. 접근경보장치 설치 시, 설치된 바닥에 접근하면 설비가 단계에 따라 감지, 정지해야함 6.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 받아 기준가격 산정 7. 사후기술지도 대상 품목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비상정지장치, 도어잠금장치, 안전제어기기, safety릴레이, 그 밖에 옵션· 부속장치 등	- 아래와 같이 입력처리 출력기능(I-L-O)을 갖출 것 · 안전입력기기(I) : 비상정지 및 도어잠금장치(락, 스위치 등) 설치 · 안전제어기기(L) : 안전컨트롤러 또는 안전PLC 등 설치 · 안전출력기기(O) : safety릴레이 등 설치 - 구성 부품은 KC, KCs, CE 등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KCs인증 대상은 반드시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설치된 설비에 접근하면 설비가 단계에 따라 감지, 정지해야함 - 해당 설비 안전에 관한 기능 추가(옵션)가능 · 라이트 커튼, 레이저스캐너, 방호울, 안전매트 등 (KCs인증 대상은 반드시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 따른 방호울이 설치되거나 밀폐형 구조일 것.
경보장치	-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경보음) 필수

※ 입력처리 출력기능(I-L-O) 지원판단기준 : I-L-O 구성 모두 설치되지 않은 설비에 한해 원칙적으로 지원 하되, 안전입력기기(I)만 기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 가능

3.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2차 공모 적용)



- (지원목적) 기계설비 등에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를 설치하여 끼임·부딪힘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이동형 위험설비에 센서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 등 충돌위험시 서행·정지하는 시스템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1. 무인운반차 등 이동형 위험설비를 보유(신규구매) 및 사용하는 사업장 2.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설치기준은 안전검사인증 기준에 따를 것. 3. 품목이 설치되는 지원설비가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既 검사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인증·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4. 경보장치는 작동시 작업현장에서 작업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 5.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6. 사후기술지도 대상 품목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비상정지장치, 레이저스캐너, 안전제어기기, safety릴레이, 그 밖에 장치 등	- 아래와 같이 입력처리 출력기능(I-L-O)을 갖출 것 - 안전입력기기(I) : 레이저 스캐너 및 비상정지장치 등 설치 - 안전제어기기(L) : 안전컨트롤러 또는 안전PLC 등 설치 - 안전출력기기(O) : safety릴레이 등 설치 - 각 구성 및 기타 추가 부품은 KCs, CE, S마크, UL 등 각각의 적합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KCs인증 대상은 반드시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접근경보장치가 설치된 바닥에 접근하면 설비가 단계에 따라 감지, 서행, 정지 해야함
경고장치	-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경보음) 필수

※ 입력처리 출력기능(I-L-O) 지원판단기준 : I-L-O 구성 모두 설치되지 않은 설비에 한해 원칙적으로 지원 하되, 안전입력기기(I)만 기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 가능

4.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비접촉 과상승방지장치)



- (지원목적) 고소작업대에 “비접촉식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 끼임·부딪힘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고소작업대와 천장 사이에 거리(높이)를 센서로 측정하여 위험 높이인 경우, 자동정지하는 장치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1.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를 보유(신규구매포함)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2. 비접촉 과상승방지장치를 고소작업대 당 최소 4개 이상 탈착이 불가하도록 고정하여 설치할 것 3. 상부 구조물과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상부 사이 간격 최소 0.5m에서 정지할 것. 4. 고소작업대 동작시, 비접촉과상승방지 기능 해지가 불가능한 구조일 것. 5.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6. 사후기술지도 대상 품목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비접촉 과상승방지장치	- 안전인증(KC), 한국산업표준(KS)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 - 감지방식: 비접촉식(전파, 레이저 이상의 성능) - 비접촉 과상승방지장치를 고소작업대 개당 최소 4개 이상을 탈착이 불가하도록 고정하여 설치할 것 -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

5.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옵션 : 흔들림 방지장치)(2차 공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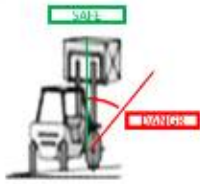
- (지원목적) 크레인에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및 흔들림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끼임부딪힘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크레인에 인공지능(AI)기반 모델과 카메라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위험구역에 근접하는 경우, 차례로 경보 및 정지하는 시스템
 - 옵션 : 크레인이 물건을 인양·이동시 발생하는 흔들림을 제거하여 물건의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인공지능(AI)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1. 크레인을 보유(신규설치포함) 및 사용하는 사업장 2. 설치·운전환경에 따라 구역 및 단계별 작업자를 감지하고, 경보·정지 기능을 탑재할 것. - 설치 후, 화물 권상·권하 시 매달린 화물 밑에 작업자가 있는 경우, 권상·권하동작 정지 3. 화면이 끊김, 부자연스러움, 시스템 불안정 등은 지원 불가 4.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 주요 구조부 변경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고 적합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안전인증을 다시 받은 경우, 제품심사 비용 및 부대비용(설계도면 작성, 하중시험 등) 일부 지원 가능 ※ 단, 안전인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5. 카메라는 크레인 작동지역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할 것. 6.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까지 「인공지능(AI)관련 카메라 설치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지원(첨부4) 7. 경보장치는 작동시 작업현장에서 작업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음량을 갖출 것 8. 고보라이트(바닥조명)는 실내에서 일반조명을 소등하지 않고 바닥에 선명하게 정지 지역이 표시되어야 할 것 9.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10. 사후기술지도 대상 품목
흔들림 방지장치 (옵션)	1. 크레인을 보유(신규설치포함) 및 사용하는 사업장 2. 출발·정지, 이동·정지 직후 흔들림이 거의 없어야 할 것. 3.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 주요 구조부 변경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고 적합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4.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5. 사후기술지도 대상 품목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카메라	- 종류 : 일반카메라(열화상 카메라 설치 가능)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통합제어장치 (AI영상분석서버, 무선통신기, 컴퓨터 및 그 밖에 부속장치 등)	-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이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 AI알고리즘 사용 : YOLO 객체 탐지 수준의 알고리즘 이상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 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에서 AI알고리즘 사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 · 전파 인증(FFC, CE, IC, CB, TELEC, KCC 등) 제품 · 시스템 탑재하여 모니터링 화면이 끊기지 않고, 성능을 안정적으로 적정하게 유지 · 분진유입,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 제작, 사무실 설치 등 조치 · 설치 후, 화물 권상·권하 시 매달린 화물 밑에 작업자가 있는 경우 권상·권하동작 정지(사람 접근 약 3m×3m 면적에서 크레인이 정지되어야 함)
고보라이트 (바닥조명)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경보장치	-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및 부저(경보음) 필수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흔들림 방지장치 (옵션)	- 출발·정지시 발생하는 관성 및 이동·정지 위치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진동(흔들림)을 제거 - 옥외 설치시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6.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 (지원목적)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끼임·부딪힘·깔림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무선, ICT,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 안전장치로서 다음을 말함

- 전도예방장치 : 하역운반기계가 중량물 운반시 무게와 중심을 감지하여 전도 등을 예방하는 장치
- 충돌방지장치 : 카메라·센서를 통해 하역운반차량이 주변 근로자와 충돌 위험을 경고장치로 알려 예방하는 장치
- 자동·서행 및 방지장치 : 무선장치 및 작업자가 착용한 태그(tag) 등을 통해 전동지게차 및 근로자가 접근하여 충돌위험이 있을 경우, 거리별로 서행 및 정지하는 장치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 지게차, 굴착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를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 단,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설치 및 포함되는 전동지게차만 가능 - 안전장치를 부착하려는 지게차는 취득 및 등록에 따른 지자체 신고를 필한 설비에 한함. - 경보장치는 작동시 작업현장에서 작업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단,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는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사후기술지도 대상 품목

○ (성능기준) 구분별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 ① 전도방지장치

구성	최소 성능기준
로드센서	- 최대 측정하중 : 7ton 이상 - 무게 단위: kg - 방수방진등급: IP55이상
필수구성품 (모니터 경보장치 무선통신기)	-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 지게차 화물운반무게, 포그적재 화물무게, 안정도(기울기) 등을 표시 · WiFi 등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로드센서, 모니터, 무선통신기 등) 간 연결되어야 함. (유선 연결은 지원 불가) · 정격하중에 85% 이상 및 기울기가 위험 수준시 경보가 시각 및 청각으로 작업자에게 전달되어야 함. ※ KOSHA GUIDE(M-185-2015)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지게차의 안정조건”을 따를 것

- ② 충돌예방장치(카메라 센서형, 일반 센서형)

구분	구성	최소 성능기준
카메라 센서형	필수구성품 (모니터, 경보장치, 무선통신기)	-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영상 및 기타 위험 정보 등) 표시 · WiFi 등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카메라, 감지장치, 무선통신기) 간 연결되어야 함. (유선 연결은 지원 불가)
	카메라 및 감지장치	- 카메라 및 감지장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소 4대 이상 설치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감지장치는 최소 1m이상 거리에서 근접하는 사람 또는 물체를 감지
일반 센서형	필수구성품 (모니터, 경보장치, 무선통신기)	-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영상 및 기타 위험 정보 등) 표시 · WiFi 등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감지장치, 무선통신기) 간 연결되어야 함. (유선 연결은 지원 불가)
	후방충돌 감지장치	- 감지장치는 최소 1m이상 거리에서 근접하는 사람 또는 물체를 감지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필수 구성품(모니터, 경보장치, 무선통신기) 등 타 장비와 통합하여 설치 가능

- ③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구성	최소 성능기준
필수구성품 (무선통신기, 제어장치, 경보장치)	-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 태그(사람)와 통신기(지게차등), 통신기(지게차등)와 통신기(지게차등)가 서로 접근시 거리기준에 따라 서행 및 정지 · 서로 통신기(지게차 등)끼리 근접하여 멈췄을 경우, 충돌범위 외로 벗어날 수 있는 임시해제기능이 있어야 함 ·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외부 노출장비만 적용)
작업자 태그	-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 - 크기 및 무게: 작업자 착용 및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정도의 소형·경량일 것 - 배터리가 내장된 경우, 최소 24시간 이상 작동되고, 작업자가 임의로 off할 수 없어야 함.

7.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지원목적) 이동식 크레인에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를 설치하여 전도·떨어짐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이동식 크레인에 센서 및 전도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전도를 예방하고, 무선통신을 통해 전도의 상태 및 위험 등을 스마트 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이동식 크레인 통합전도방지 시스템	1. 이동식 크레인을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2. 이동식 크레인 방호장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3호[안전검사 고시] 별표2[크레인 검사기준]를 따름. 3. 투자완료확인 요청 전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 4.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 받아 기준가격 산정 ※ 단, 제조사에서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 시 실거래금액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가능(5건 이상) 5. 사후기술지도 대상품목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성	최소 성능기준
이동식 크레인 안전장치 일체형 (컨트롤러, 모니터, 붐길이센서, 붐각도센서,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스위치)	- WiFi 등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 현황을 볼 수 있고, 부적정 및 위험 상황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함. - 붐길이센서 : 길이검출용 또는 신호전달용 - 컨트롤러: MICOM 사용 또는 동등 이상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신뢰성 확보 - 로드센서: 스트레인 게이지 또는 로드셀 - 모니터: 7인치 이상 - 하중: 0.1ton 단위표시 - 작업반경: 0.1m 단위표시 - 붐높이: 0.1m 단위표시 - 과부하방지장치: 안전인증품(KCs) 사용

8.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지원목적)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을 설치하여 **갈림·끼임·전도**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센서 및 전도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전도를 예방하고, 무선 통신을 통해 전도의 상태 및 위험 등을 스마트 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통합전도방지 시스템	1.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2.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3호 [안전검사 고시] 별표 12[고소작업대 검사기준]를 따를 것. 3. 투자완료확인 요청 전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 4.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 보고서를 제출 받아 기준가격 산정 ※ 단, 제조사에서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 시 실거래금액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가능(5건 이상) 5. 사후기술지도 대상 품목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성	최소 성능기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일체형*	- WiFi 등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 현황을 볼 수 있고, 부적정 및 위험 상황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함. - 컨트롤러: MICOM 사용 또는 동등 이상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신뢰성 확보 - 로드센서: 스트레인 게이지 또는 로드셀 - 붐길이센서 : 길이검출용 또는 신호전달용 - 모니터: 7인치 이상 - 하중: 0.1ton 단위표시 - 작업반경: 0.1m 단위표시 - 붐높이: 0.1m 단위표시 - 과부하방지장치: 안전인증품(KCs) 사용

* 컨트롤러, 모니터, 붐길이센서, 붐각도센서, 아웃트리거상태감지컨트롤러, 아웃트리거인출감지센서, 잭착지감지센서, 선회센서, 하중컨버터, 과부하방지장치

9.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지원목적)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를 설치하여 전도떨어짐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센서 및 전도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전도를 예방하고, 무선통신을 통해 전도의 상태 및 위험 등을 스마트 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1.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2.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방호장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43호[안전검사 고시] 별표3[리프트 검사기준]을 따름 3. 투자완료확인 요청 전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 4.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 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단, 제조사에서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 시 실거래금액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가능(5건 이상) 5. 사후기술지도 대상 품목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성	최소 성능기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장치 일체형*	- WiFi 등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 현황을 볼 수 있고, 부적정 및 위험 상황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함. - 컨트롤러: MICOM 사용 또는 동등 이상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신뢰성 확보 - 로드센서: 스트레인 게이지 또는 로드셀 - 모니터: 7인치 이상 - 하중: 0.1ton 단위표시 - 작업반경: 0.1m 단위표시 - 붐높이: 0.1m 단위표시 - 과부하방지장치: 안전인증품(KCs) 사용

- * 붐-아웃트리거연동장치, 아웃트리거 잭하중감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붐과인출방지장치

10. 인화성가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IoT 기반)(2차 공모 적용)



- (지원목적)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 기반의 “인화성가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화재,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인화성가스·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감지기, 수신반 등을 설치하여, 가스누출상황을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모니터링·경보 할 수 있는 시스템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인화성가스 통합모니터링 안전장치 일체형	- 화재·폭발 위험장소가 있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제5항 인화성가스, 제6항 인화성 액체 취급·저장 설비 보유 사업장에 지원 ○ 이동식 지원기준(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 시 지원) - 건설업 등록증* 보유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수행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전문건설업(①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②기계설비·가스 공사업, ③가스·난방공사업, ④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증 - 건설업 등록증 보유업체로서, 화재·폭발 위험장소(인화성가스·액체 취급·저장설비 보유 사업장) 내 정비·보수를 위해 주기적으로 출입*하여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화재위험 작업 수행 업체 * 작업 대상 사업장에서 발급한 작업 관련 확인서(관련 증빙자료, 1년 이내 발급분)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단, 인화성가스·액체 등 취급·저장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정비·보수를 목적으로 이동식 시스템 신청하는 경우 지원가능 예1) 인화성가스 통합 모니터링시스템(고정식)과 동등한 성능의 설비가 기존 설치된 경우 → 이동식 단독 지원 가능 예2) 인화성가스 통합 모니터링시스템(고정식) 신규 설치 시 → 이동식 추가 지원 가능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8조 [별표18]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경우, 질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센서를 추가(옵션)할 수 있음 -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사용되는 방폭구조전기기구 등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1호[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안전인증품(KCs) 사용 및 관련 서류(인증서 등) 제출 - 이동식 설비는 설치·사용 조건에 관계없이 구성품 일체 방폭인증(KCs) 전기기구 선정 및 사용 - 경보장치는 사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일상 소음 이상의 경보음 설정 및 주변과 쉽게 구별 가능한 경보 색상(명도) 일 것 - 투자완료확인(요청)시, 설치 업체의 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성능시험 결과서를 제출 받을 것 ※ 필요 시 투자완료 때, 설치 업체 동행 하에 시험가스 흡인 및 성능시험 실시 -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 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단, 이동식은 제조사에서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 시 실거래금액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가능(5건 이상) - 사후기술지도 대상 품목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분	최소 성능기준
수신반 (모니터링 설비)	- 화면에서 가스감지기 위치 및 감지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것 ※ 이동식 시스템은 스마트폰 등 이동장치를 통해 확인 가능할 것 - 스마트폰 등을 통한 동시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 근로자의 스마트폰으로 경보 - 확장 유닛(다채널)을 사용하여 추가되는 기능 및 수치 등이 화면에 표시될 것 - 긴급차단장치 및 HMI시스템 등 가스 확산 방지, 시스템 통제 기능을 위한 구성품 추가(옵션) 가능 - 방수방진등급: IP65 이상
가스감지기	- 주전원이 차단되어도 30분 이상 연속적으로 가스의 감지와 경보기능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감지기는 항상 가동)
경보장치	-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및 부저(경보음) 필수 - 방수방진등급 : IP65 이상 ※ 수신반내 탑재가능

※ 각 구성품(전기기구 및 부속품 등)을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 시 한국산업표준(KS) 등 기준에 따른 적합한 방폭전기기구 선정 및 사용(안전인증품(KCs)) 및 방폭구조)

11.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2차 공모 적용)



- (지원목적) 이륜차 운전자가 도로주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이륜차 충돌보호용 에어백 조끼”를 지원하여 교통사고에 따른 전도·충돌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이륜차 운전자가 충돌 등으로 자리에서 이탈하는 경우, 조끼와 이륜차에 연결된 고리가 풀리면서 에어백이 작동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 배달, 택배업, 음식업 등 관련 업종에 지원(표준산업분류: 49401~2, 561XX) - 배달, 택배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에 한해 지원 ※ 최대 지원한도(수량)은 신청 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수에 한해 지원 - CE, ECE 중 어느 하나 이상 인증받은 제품 또는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까지 해당 보호구 지급이 포함된「보호구 지급대장」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지원(첨부4) - 사후기술지도 대상 품목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성	최소 성능기준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 CE, ECE인증품 중 어느 하나 이상 또는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 - 이륜차 운전자가 전도·충돌 등으로 운전석에서 이탈할 경우, 이륜차에 연결된 버클(고리)등이 풀리면서 에어백이 작동하는 구조일 것

12. 근력보조슈트(2차공모 적용)



- (지원목적)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장기간 반복 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자에 대해 근력운동을 보조할 수 있는 “**근력보조슈트**”를 지원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기여
- (품목설명) 고정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이 되는 작업을 인공골격·근육, 센서 및 동력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줄여주는 슈트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근력보조슈트	1. 근골격계 부담작업(2호 ~11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해 지원 ※ 단, 지원사업장 내 사용으로 한함(산안법 상 특수고용형태 택배원은 지원가능) - 신청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표」 제출받을 것(첨부4) ※ 참조 : 공단 홈페이지-사업소개(산업보건)-근골격계질환예방 ※ 최대 지원한도(수량)는 신청 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수에 한해 지원 ※ 1명이 다수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유해요인이 가장 높은 1종만 지원 2. CE인증제품 또는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 ※ 제품차제(전체) 안전성 및 품질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3. 가격결정근거자료 제출 ※ 수입면장(수입품) 및 실거래 세금계산서(국내, 5건이상) 4.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까지 해당 보호구 지급이 포함된「보호구 지급대장」제출하는 조건으로 지원(첨부4) 5. 사후기술지도 대상 품목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분	최소 성능기준
근력보조슈트	- CE인증제품 또는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 - 외골격, 철제프레임, 동력 및 센서, 인공(합성)근육 등이 있는 제품 (밴드, 섬유, 패드만으로 이루어진 슈트는 지원불가)

13.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 (지원목적)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적은 근력과 일정한 근력으로 보조할 수 있는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를 지원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기여
- (품목설명) 사람이 취급하기에 무겁고 다양한 중량물을 일정한 힘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장치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1. 근골격계 부담작업(6호~10호)에 해당되는 단위 작업장소에 한해 지원 - 신청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표」 제출받을 것(첨부4) ※ 참조 : 공단 홈페이지-사업소개(산업보건)-근골격계질환예방 2.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단, 단품인 경우 실거래 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격 결정 가능(5건 이상) 3. 투자완료 확인시, 취급중량물 무게가 초과하는 경우, 알람 등이 울려야 함. 4. 사후기술지도 대상 품목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분	최소 성능기준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 CE인증제품 또는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 - 중량물 취급시, 센서 및 공압기술로 무게를 자동감지 및 제어하여, 작업자가 일정한 근력(부하)을 사용해야함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에서“작업자가 일정한 근력(부하)을 사용하는지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 - 취급중량물 무게(중량)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무게(중량)가 취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알람 등이 울려 사용자가 알 수 있어야 함.

14. 스마트 귀마개

○ (지원목적) 소음 발생 작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스마트 귀마개”를 지원하여 원활한 의사소통과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함.

○ (품목설명) 전파 및 그 밖에 스마트 기술 등을 통해 소음을 제거하는 귀마개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스마트 귀마개	1. 소음작업(85dB이상)에서 단위 작업장소 기준으로 직전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따른 소음 노출 근로자의 150%에 한해 지원 2. 귀마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보호구 안전인증고시]에 따른 안전인증품(KCs)일 것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4.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까지 해당 보호구 지급이 포함된「보호구 지급대장」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지원(첨부4) 5. 사후기술지도 대상 품목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분	최소 성능기준
스마트 귀마개	- KCs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유해소음차단 가능 - 의사소통(대화) 가능 - 1회 충전시 24시간 이상 사용가능 - 작업자 착용 및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정도의 소형 크기 및 경량일 것

※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최우선선정**

- ① '22년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 ②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③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 기업
④ **특별재난지역**(산불 등의 피해지역) 내 **피해사업장**

선 정 항 목		항목별 가중치	비고
■ 공통적용 항목		최대 70점	
①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근로자수 5인 미만 10점, 5~10인 미만 5점, 10~20인 미만 3점		최대 10점	'23.3월 공식통계 상시 근로자수 기준
② 최근 3년간('20 ~ '22년) 보조금 지급을 받지 않은 사업장		5점	
③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업종		최대 15점	'22년 공식통계 기준 중업종 단위배점
구분	사고사망만인율 2배수 이상		
배점	15점	10점	5점
④ 최근 3년간('20 ~ '22년)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재해자 발생 사업장		최대 20점	'20~22년 공식통계 기준
구분	3년 발생	2년 발생	1년 발생
배점	20점	15점	10점
⑤ 지원품목 다수사업장		최대 20점	스마트 안전장비 13개 항목 기준(단, 스마트 귀마개 제외) ※ 보조지원 대상결정 이후 일부 품목 취소 시 전체 취소됨
구분	4개 품목	3개 품목	2개 품목
배점	20점	15점	10점
■ 자율활동 우수항목		최대 30점	
⑥ KOSHA-MS 인증 사업장		15점	인정 유효기간 내 보조금신청 시 점수 부여
⑦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참여 사업장 - 인정 10점, '22년 컨설팅 실시사업장(인정사업장 제외) 5점		10점	인정 유효기간 내 보조금신청 시 점수 부여
⑧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 업체 - '22년 공생협력 참여 협력업체 포함		5점	
■ 가점 항목		(가점) 20점	
⑨ 고위험 관련 스마트 안전장비 신청사업장 - 고위험기계설비 스마트통합안전시스템 -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 인화성가스 통합모니터링시스템		20점	고위험기계설비 및 크레인 설치, 인화성물질 취급 사업장 등
계		최대 100점	

※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②→③→④→⑤→⑥→⑦)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

※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사업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⑧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 업체로 수정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사업장명	00 가공 산업	평가일시	23. 3. 22.	작성자	김안전
작업공정 (작업내용)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위험성 결정	개 선 대 책	
재료 입고 인력 또는 운반 기계(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자재(철판)을 운반하는 작업	◦ 지게차운행 중 과적재에 따른 전도 재해 발생	◦ 작업계획서 작성 ◦ 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 적정 ☒ 보완	◦ 스마트 전도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하여 상시 과적재와 전도여부를 운전자에게 알려 예방하도록 조치	
	◦ 지게차운행 중 보행 근로자와 충돌 재해 발생	◦ 작업계획서 작성 ◦ 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 보행자와 지게차 운반로 구획 구분	☐ 적정 ☒ 보완	◦ 스마트 충돌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하여 충돌 위험을 운전자에게 사전에 알려 예방하	
	◦ 원자재(철판)이 적재불량으로 무너져 근로자 발림 재해 발생	◦ 적재대 및 고정장치설치하여 적재 ◦ 적재 주변을 고려하여 구획 구분	☒ 적정 ☐ 보완	◦ 현상태 유지	
절 단 자동절단기를 사용하여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	◦ 자동 절단기 수리·점검 중 급작스러운 작동으로 근로자 절단 사고 발생	◦ LOTO 실시	☐ 적정 ☒ 보완	◦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위험기계기구)를 설치를 통해 근로자를 자동 감지하여 정지하도록 조치	
	◦ 자동 절단기 주변에 관계자 외 사람이 출입하여 끼임 등 사고 발생	◦ 안전보건표지(출입금지) 부착	☐ 적정 ☒ 보완	◦ 인공지능기반(AI) 인체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 및 기타 재해 등 예방	
용 접 산업용로봇을 사용하여 원자재(철판)을 용접하는 작업	◦ 수리·보수·기타 확인을 위해 산업용로봇 근처로 가는 중 급작스러운 작동으로 충돌 위험이 있음	◦ LOTO 실시	☐ 적정 ☒ 보완	◦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위험기계기구)를 설치를 통해 근로자를 자동 감지하여 정지하도록 조치	
	◦ 용접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해 화재 발생	◦ 안전보건표지 부착	☐ 적정 ☒ 보완	◦ 인공지능기반(AI) 인체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 및 기타 재해 등 예방	
	◦ 산업용 로봇 충전부 노출 부분에 접촉하여 감전 위험	◦ 충전부에 절연덮개 설치 - 덮개 제거하여 작업시 작업계획서 관리감독자배치 - 주회 충전부 노출여부 순회점검 ◦ 안전보건표지 부착	☒ 적정 ☐ 보완	◦ 현상태 유지	
적 재 가공된 철판을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	◦ 천장크레인으로 가공 철판을 옮기는 도중 근로자와 충돌 및 자재에 발림 재해 발생	◦ 작업계획서 작성 ◦ 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 적정 ☒ 보완	◦ 인공지능(AI) 크레인충돌예방장치를 설치하여 충돌사고 예방	
	◦ 지게차운행 중 보행 근로자와 충돌 재해 발생	◦ 작업계획서 작성 ◦ 보행자와 지게차 운반로 구획 구분	☐ 적정 ☒ 보완	◦ 스마트 충돌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하여 충돌 위험을 운전자에게 사전에 알려 예방하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

1. 제작·공급업체(△△상사)와 지급신청사업장(00 가공산업)은 제작·공급업체(△△상사)가 지급신청사업장(00 가공산업)에 제공·설치 예정인 스마트 안전장비(인공지능기반 인체 감지시스템)이(가) 아래와 같이 (공단)최소 성능기준 이상임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

주요기능	프레스 공정 및 산업용로봇 등의 위험지역 근로자 접근시 경고 또는 설비 정지		
구분	(공단) 최소 성능기준	(제작·공급업체) 설치·제공 장비 사양	적정 여부
카메라	- 종류 : 열화상카메라 또는 일반카메라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일반 카메라(유효감지면적 5m×10m) 10대 - (설치지역)프레스공정 4대, 산업용로봇 위험지역 4대, 기타 위험지역 2대 설치 - 방수방진 등급 IP66	☑
통합제어장치 (AI영상처리장치, 컴퓨터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비 및 그 밖에 장치 등)	-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 끼임부딪힘과 추가 옵션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작동(경보 또는 조치 등) - 분진유입,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 제작, 사무실 설치 등 조치 조건 - AI알고리즘 사용 : YOLO 객체 탐지 수준의 알고리즘 이상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에서 AI알고리즘 사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	- 작업자가 위험설비에 접근하는 것을 신속히 인지하여 경고 및 위험설비 정지 - (통합제어장치)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 AI영상처리장치(YOLO 알고리즘), 이더넷 통신방식 적용 등 - 한국00협회(KOLAS 인정기관)에서 증명한 AI YOLO 알고리즘을 통한 딥러닝 적용 (인증서 참고) - 위험지역 작업장소 등 설치환경에 맞게 케이스 제작 설치	☑
감지영역설정	- 카메라가 감지하는 위험구역 변경 가능	- 일반 카메라 1대당 위험감지영역(2개소) 설정 및 설정 위험지역 변경 가능	☑
경보장치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 (경보음) 필수	- 방수방진등급 : IP66 - 경고등: 광원 LED, 3단계 적용(녹색, 황색, 적색), 점등·점멸 및 황색·적색 시 부저 기능	☑

2. 제작·공급업체가 제공·설치한 스마트 안전장비(구성포함)의 “설치·제공 장비성능” 이 “최소성능기준” 에 미달 또는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급업체 및 지급신청사업장 각각의 귀책에 따라 책임의 의무가 있으며,
3.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158조 및 융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그 밖에 공단 내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 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제작·공급업체명 : △△AI

사업주 : 김 안전 (서명)

지급신청사업장명 : 00 가공산업

사업주 : 이 보건 (서명)

사업장 전경 및 지원품목 설치대상 작업 증빙사진(자금신청)

사업장명	<u>(주)△△산업</u>	작성일자	<u>2023. 4 . 3.</u>
☐ 설치 및 구매 품목명 : <u>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u> ☐ 제작·공급업체명 : <u>□□시스템(주)</u> ☐ 완료 증빙사진			
사진1		사진2	
사진 제목1		사진 제목2	
사진3		사진4	
사진 제목3		사진 제목4	
사진5		사진6	
사진 제목5		사진 제목6	

※ 필요에 따라 사진(칸) 등을 추가하여 작성

확인자(대표자)

성명

(서명)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완료)

1. 제작·공급업체(△△상사)와 지급신청사업장(00 가공산업)은 제작·공급업체(△△상사)가 지급신청사업장(00 가공산업)에 제공·설치 예정인 스마트 안전장비(인공지능기반 인체 감지시스템)이(가) 아래와 같이 (공단)최소 성능기준 이상임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

주요기능		프레스 공정 및 산업용로봇 등의 위험지역 근로자 접근시 경고 또는 설비 정지	
구분	(공단) 최소 성능기준	(제작·공급업체) 설치·제공 장비 사양	적정 여부
카메라	- 종류 : 열화상카메라 또는 일반카메라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일반 카메라(유효감지면적 5m×10m) 10대 · (설치지역)프레스공정 4대, 산업용로봇 위험지역 4대, 기타 위험지역 2대 설치 - 방수방수 등급 IP66	☑
통합제어장치 (AI영상처리장치, 컴퓨터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비 및 그 밖에 장치 등)	-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 깨임부딪힘과 추가 옵션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작동(경보 또는 조치 등) · 분진유입,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 제작, 사무실 설치 등 조치 조건 · AI알고리즘 사용 : YOLO 객체 탐지 수준의 알고리즘 이상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에서 AI알고리즘 사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	- 작업자가 위험설비에 접근하는 것을 신속히 인지하여 경고 및 위험설비 정지 · (통합제어장치)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 AI영상처리장치(YOLO 알고리즘), 이더넷 통신방식 적용 등 · 한국00협회(KOLAS 인정기관)에서 증명한 AI YOLO 알고리즘을 통한 딥러닝 적용 (인증서 참고) - 위험지역 작업장소 등 설치환경에 맞게 케이스 제작 설치	☑
감지영역설정	- 카메라가 감지하는 위험구역 변경 가능	- 일반 카메라 1대당 위험감지영역(2개소) 설정 및 설정 위험지역 변경 가능	☑
경보장치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경보음) 필수	- 방수방진등급 : IP66 - 경고등: 광원 LED, 3단계 적용(녹색, 황색, 적색), 점등·점멸 및 황색·적색 시 부저 기능	☑

2. 제작·공급업체가 제공·설치한 스마트 안전장비(구성포함)의 “설치·제공 장비성능”이 “최소성능기준”에 미달 또는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급업체 및 지급신청사업장 각각의 귀책에 따라 책임의 의무가 있으며,
3.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158조 및 융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그 밖에 공단 내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 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제작 · 공급업체명 : △△AI

사업주 : 김 안전 (서명)

지급신청사업장명 : 00 가공산업

사업주 : 이 보균 (서명)

스마트 안전 보호구 지급대장

1. 사업장명 :

2. 지급연도 :

연번	지급일	보호구 명칭	수량	인수자 성명	인수자 서명

확인자(대표자)

성명

(서명)

인공지능(AI)관련 카메라 설치에 대한 서약서

1. 지급대상사업장()은 해당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아래에 법적 사항을 준수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급대상사업장()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

◆ (공 통) 근로자 대표*가 해당 스마트 안전장비()의 설치를 동의하였으며, 설치 주변 잘 보이는 장소에 "시설안전(산업안전) 및 화재예방"목적으로 해당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였음을 안내하는 표지 등을 부착하여 공지하였음.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근로자 30인 이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구성하고, 제20조 1항 14호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따라 해당 스마트 안전장비()의 설치를 협의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였음

위 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 ·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지급대상사업장명 :

사업주 :

(서명)

근로자대표 :

(서명)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 해당사항에 √ 하시고, 내용을 기재 하시오)

● 조 사 구 분	☐ 정기조사 ☐ 수시조사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 ☐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시 ☐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시
● 조 사 일 시	● 조 사 자
● 부 서 명	
● 작업공정명	
● 작 업 명	

가. 작업장 상황 조사

● 작업 설비	☐ 변화 없음	☐ 변화 있음(언제부터)
● 작업 량	☐ 변화 없음	☐ 줄음(언제부터)
		☐ 늘어남(언제부터)
		☐ 기타()
● 작업 속도	☐ 변화 없음	☐ 줄음(언제부터)
		☐ 늘어남(언제부터)
		☐ 기타()
● 업무 변화	☐ 변화 없음	☐ 줄음(언제부터)
		☐ 늘어남(언제부터)
		☐ 기타()

나. 작업조건 조사

1단계 : 작업별 과제 내용 조사 (유해요인 조사자)

직종명(Job Title) :

작업내용(Tasks) :

2단계 : 각 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 (근로자 면담)

작업 부하(A)	점수	작업 빈도(B)	점수
매우 쉬움	1	아주 가끔(2개월마다 1~2회)	1
쉬움	2	가끔(하루 또는 주2~3일)	2
약간 힘들	3	자주(1일 4시간)	3
힘들	4	계속(1일 4시간 이상)	4
매우 힘들	5	초과근무 시간(1일 8시간 이상)	5

작업내용	작업 부하(A)	작업 빈도(B)	총점수(A×B)

3 단계 : 유해요인 및 원인 평가서

직 종 명																																			
<유해요인 설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25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padding: 50px 10px;"> <작업1 사진 또는 그림 첨부> </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padding: 50px 10px;"> <작업2 사진 또는 그림첨부> </td> </tr> </table>			<작업1 사진 또는 그림 첨부>	<작업2 사진 또는 그림첨부>																															
<작업1 사진 또는 그림 첨부>	<작업2 사진 또는 그림첨부>																																		
작업별로 관찰된 유해요인 원인분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3d3d3;"> <th style="width: 35%;">유해요인</th> <th style="width: 45%;">유해요인에 대한 원인</th> <th style="width: 20%;">총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 <작업내용1> _____ </td> <td></td> <td rowspan="7"></td> </tr> <tr><td> </td><td></td></tr> <tr><td> </td><td></td></tr> <tr><td> </td><td></td></tr> <tr><td> </td><td></td></tr> <tr><td> </td><td></td></tr> <tr><td> </td><td></td></tr> <tr> <td style="padding: 5px;"> <작업내용2> _____ </td> <td></td> <td rowspan="7"></td> </tr> <tr><td> </td><td></td></tr> <tr><td> </td><td></td></tr> <tr><td> </td><td></td></tr> <tr><td> </td><td></td></tr> <tr><td> </td><td></td></tr> <tr><td> </td><td></td></tr> </tbody> </table>			유해요인	유해요인에 대한 원인	총점수	<작업내용1> _____															<작업내용2> _____														
유해요인	유해요인에 대한 원인	총점수																																	
<작업내용1> _____																																			
<작업내용2> _____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또는 전부)를 대납하게 하거나 되돌려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추후에도 하지 않겠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사업참여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사업주가 직접 서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클린사업 보조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일부(또는 전부)를 현금 또는 제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하며,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사업참여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

※ 클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는 투자금액 중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주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직접 납부하여야함. 만약 이를 공급업체 등을 통해 되돌려 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 련 법 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투자완료)

사업장명	(주)△△산업	작성일자	2023. 4 . 3.
☐ 설치 및 구매 품목명 :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 ☐ 제작·공급업체명 : □□시스템(주) ☐ 완료 증빙사진			
사진1		사진2	
사진 제목1		사진 제목2	
사진3		사진4	
사진 제목3		사진 제목4	
사진5		사진6	
사진 제목5		사진 제목6	

※ 필요에 따라 사진(칸) 등을 추가하여 작성

확인자(대표자)

성명

(서명)

지급보증보험 예시(투자완료 요청일 이전 날짜로부터 4년)

<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

-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4년으로 적용
※ (예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23.10.13.(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보험기간: '23.9.30. ~ '27.9.29.
- ▶ 피보험자 :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보험계약자 : 지급대상사업장
- ▶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122-82-04898 안전보건공단
보험가입금액	[] W []	보험료	■ 일시납 □ 분납
보험기간	2023년 09월 30일부터 2027 09월 29일까지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클린사업장 보조금 지원사업 2023년 09월 30일부터 2027 09월 29일까지 []		

<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

-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3년 2개월로 적용
- ※ 예시) ①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23.6.30.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3.6.15. 경우
'23.6.15. + 3년 2개월 => '23.6.15. ~ '25.8.14.
- ②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발행 가능
'23.6.1. 발행 시 '23.6.15. + 3년 2개월 가산하여 => '23.6.1. ~ '25.8.14.
- ▶ 피보험자 : 지급대상사업장, 보험계약자 : 제작·공급업체
- ※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 **계약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 이상
- ▶ 필요서류 : 지급대상사업장과 제작·공급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같음가능)
- ▶ 발급기관: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
-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 >

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일시납 ☐ 분납
보험기간	2023년 6월 15일 ~ 2025년 8월 14일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하자보증금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담보기간 계약세금일자 계약금액 보증금율 호지반 산업안전보건센터 교육훈련 역량강화 사업 실습·체험 교육시설 및 장비 등 제작·운송·현장 설치 2023년 6월 15일 ~ 2025년 8월 14일 [] 30%		

별첨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구분

일선기관명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6711-2898
강원지역본부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033-815-1090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39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02-2086-8026
강원동부지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820-2572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681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26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055-269-0546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53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062-949-8764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063-240-8535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061-288-8735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16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60-3625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89-4951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053-609-0563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053-650-6834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054-478-8025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46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23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031-259-7113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031-828-1944
고양파주지사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031-540-3845
경기중부지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032-680-6538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031-481-7514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785-3342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042-620-5653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7125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9-1044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041-570-3439